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사회보장급여의이용·제공및
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
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수행기관을 추가하고, 장애인의 건강검진 정보를 사업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, 같은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 보건관리사업 수행기관

별표 4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건강검진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건강검진자료(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자료 활용에 동의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)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144